공고

분류기호 문서번호	서보211-18.82 17222 (전화번호 2-7)	기 안 용 지	전결규정 10 조 31 항 국 장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처	보건사회부장관
시행일자	1967. 9. 9	기안자 서명 조 태 웅	결 재
보존년한		기안일자 67. 9. 1	결재일자 67. 9. 5

보조기관: 보건과장, 위생계장

공고제136호

202

협조: 회계심사, 분류계, 예산계, 예산과장, 회계계, 회계과장, 문서계장, 조정계, 법무계장, 법무관

유신조	각 안 참 조
제 목	1967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 (제1안 내부결재)

법무 확인 9월9일 ½

1. 1967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보건사회부내규 제25호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규정과 보건환1438-17295 (67.7.28자)이 미용사 자격시험실시에 따른 지시에 의거 아래 요령과 같이 실시코저 합니다.

가. 실시요령 별첨 계획서와 같음

나. 동 자격시험 소요예산 집행은 본 자

22-2 (1138) 서울특별시 85

험요령을 공고후 지원자의 수효에 따라 기초산출계획에 의거 집행코저 하오며

3. 본 자격시험실시 공고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는 별첨 계획서에 의한 공고비와 같이 지출코저 합니다.

첨부 시험실시계획서 끝.

203

(제2안 본사부보고안)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환경위생과장

제목 같음

1. 당시 1967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케 되었기 보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제3안 각시도에 대한 통보(공고)) 14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같음

1. 당시 1967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관하에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나2-11.

(제4안 각보건소에 대한 통보(공고))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음.

1. 당시 1967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니 귀소관내에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할것이며

2. 전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더욱 철저 실시하여 무자격자는 금반 자격시험에 전원 응시토록 조치하고

3.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종업원 확인증 신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신고대장과 대조후 별첨 확인증 서식에 의거 신속발급토록 할것

4. 기타 등 자격시험 구비서류에 첨부된 건강진단서등을 신속발급토록하여 시험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첨부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서식

3. [illegible]수료 확인증 서식

4. 종업원 확인증 서식

204

수신처. 서사 [illegible]-62

12

22-4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이미용자격시험장 사용 승락 요청

1. 금번 당시에서는 별첨 공고문과 같이 67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바 동 시험장소로 귀교를 사용코저 하오니 협조 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본건 승락여부를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정화여자고등기술학교장. 미림여자고등기술학교장.

206

22-6

"試驗實施計劃" 別紙

1967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서

1. 시험종별

   가. 이용사 자격시험

   나. 미용사 자격시험

2. 시험일시 207

   가. 이용사 자격시험

   (1). 학과시험

   1967. 10. 15. (1일간)

   (2). 실기시험

   1967. 11. 2. — 11. 4. (3일간)

   나. 미용사 자격시험

   1967. 11. 7. — 11. 10. (4일간)

3. 시험장소 (학과 및 실기)

   가. 이미용사 자격시험은 각종 기술분야를 다루는 시험인만큼 이에 소요되는 제반시설의 실습실과 1,000여명의 응시자들을 수용할수 있고 시내 중앙지대(교통편리)에 위치하고 있

는 다음의 시설을 별도 사용승락을 얻어 사용코저함.

나. 시험장소로 사용코저하는 시설은

(1). 소재지 및 명칭(예정)

(가). 충주 남산동 ○가 8

208 정화여자 고등기술학교

(나). 충주 충주로 5가

예린여자 고등기술학교

4. 합격자 발표 및 장소

가. 학과시험결과

(1). 1967. 11. 1. (예정)

나. 실기시험 결과

(1). 1967. 11. ○. (예정)

5. 시험과목

가. 이. 미용사 학과시험(이용 미용 공통)

(1). 위생법규

(2). 소독법

(3). 공중위생학

22-8

(4). 생리해부학 (피부과학포함)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화학 및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6) 이용 또는 미용이론 (이용사는 이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나. 이미용사 실기시험

(1). 이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기술 (조발. 면도. 미용사는 파이론 셋팅 화장)

(2). 소독약의 취급 (이 미용 공통)

209 (3). 위생상의 조치 (")

6.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본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필한 이용 또는 미용학원에서 6개월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영업개설허가를 받은 이미용소에서 1년이상 종사한자.

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영업소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다. 실기시험 응시자격은 학과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7. 응시수속절차

가.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와 관계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응시원서 접수기일내에 당시 보건과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나. 응시원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소정서식)

(2) 이력서 1통

(3)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1통

(4) 종업원 확인증 1통 (소정서식)

(5) 학원수료자에 있어서는 수료확인증 1통 (소정서식)

(6) 사진 (소명함판 원서 제출전 6월이내에 탈모 정면으로 촬영한것) 3매

(7)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8) 수수료 2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이미용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1) 접수기간

22-10

1967. 9. ~~부터~~ 10. 5 까지

"단" 공휴일 제외

~~(2) 접수시간~~

~~평일 10:00 ~ 16:30 까지~~

~~토요일 10:00 ~ 11:30 까지~~

~~"단. 접수시간 외는 접수치 아니함"~~

9. 기타

제출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용사응시자는 실기시험 실시상 모델 관계가 있어 응시 1일전부터 조발치말것을 응시원서 접수시에 주지시킨다.

10. 시험위원회구성 및 위촉

가.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규정(보사부령제25호)에 의거 이미용사 자격시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 위촉은 별도 위촉한다.

211

다. 시험위원회구성

부서	위원명	위촉	직무
위원장	보건사회국장		1.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위원과 관계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위원장	보건과장		2.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 사	위생계장		1. 시험실시에 따른 준비 및 시험장을 관리하며 관계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학과시험위원		별도위촉명	1. 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진다. 2. 과목당 2명식으로 한다. 3. 1개과목에 대하여는 보사부장관이 출제.
실기시험위원		별도위촉명	1. 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진다.
서 기	보건과 위생계직원		시험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1. 학과시험 출제방법

가. 위촉받은 학과시험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20문제 (객관식)를 출제하여 과목별로 50분 이내에 해답할수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나. 출제범위는 현 이용고등기술학교의 수업과정에서 수업하는 내용정도로 한다.

다. 출제한 시험문제는 당해 시험위원이 밀봉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고 과목당 2명식 출제한것을 시험위원장이 선택 혼합 출제(20문제) 한다.

12. 시험장관리 및 감독

가. 보건과 직원 및 보건소 직원을 차출하여 시험에 관한 사무 및 시험장 감독원을 배치한다. (차출인원은 응시자수에 의거 추후 결정)

나. 감독원은 배치된 시험장 이외의 시험장 출입을 금하며 장내에서 시험답안지를 수집하여 수집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내 부정행위가 있을때에는 이를 적발하는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자를 시험위원회에 인계 회부시킨다

다. 위원회서기는 감독원의 배치 및 답안지 수집에 책임을 진다.

13. 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가. 시험답안의 채점은 당해시험 출제는 채점한 학과시험위원이 한다

213

나. 학과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하고 39점 또는 그 이하인 때에는 과락으로 하고 6개과목 평균점수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59점 이하인 때에는 낙제로 한다.

(1). 일과목 만점 100점 6과목 600점 (총점)

(2). 합격점수 360점이상 (총점)

다. 실기시험은 각과(이 미용) 공히 3개과목식 출제하여 1개과목당 40점이상 만(39점이하)는 과목 낙제로 하고 3개과목 총합점 60점이상은 실기시험 합격으로 한다.
단. 시험위원이 채점한것은 종합하여 평균으로 점수를 정한다

(1). 과목당 만점 100점 3과목 300점(총점)
(2). 합격점수 180점 이상

214

14. 합격증 교부

가. 합격자에 대하여는 소정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67.12.1 ~ 12.5 까지 당시 보건과에서 교부한다.

15. 시험위원 사례금

학과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전도자금에 의한 지불을 한다.

16. 공고방법

가. 다음공고안에 의거 공고하고 소요예산은 다음과같이 지불코저 함

(1). 공고요령

(가). 시내 주요일간지 1개사의 일간 신문(석간)에 공고한다 ([illegible] 1개사에만 공고)

공고

17. 공고(안)

공 공고제 19호

~~서울특별시공고제 1967년도 이용사및미용사 자격시험실시~~

서울특별시 시행 1967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967.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시험일자

(1) 이용사 자격시험

학과시험	67. 10. 15. 09:00부터
실기시험	67. 11. 2. 09:00부터

(2) 미용사 자격시험

학과시험	67. 10. 15. 09:00부터
실기시험	67. 11. 7. 09:00부터

215

나. 시험장소

(1) 중구 남산동 1가 8호 "정화여자고등기술학교(예정)

(2) 종로중수로 5가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예정)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1967. 9. 20부터 10. 5.까지 (공휴일제외)

~~평일은 10:00~[illegible]:30 토요일은 10:00~11:30~~

나. 접수장소

당시 보건과.

216

3. 시험과목

종별	이용사 학과시험	미용사 학과시험.
학과시험	1. 위생법규 2. 소독법 3. 공중위생학 4. 생리해부학 (피부과학포함)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화학 및 이용에 관한 부분) 6. 이용이론	1. 위생법규 2. 소독법 3. 공중위생학 4. 생리해부학 (피부과학포함)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화학 및 미용에 관한 부분) 6. 미용이론
실기시험	1. 조발 면도 (기초적기술) 2. 소독약의 취급 3. 위생상의 처치	1. 아이롱 셋팅 화장 (기초적기술) 2. 소독약의 취급 3. 위생상의 처치.

4.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사설강습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미용사 자격시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이미용학원에서 6개월이상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영업개설허가를 받은 이미용업소에서 1년이상 종사한자.

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영업소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다. 실기시험 자격은 67년도시행 이미용사

22-16

자격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5. 응시절차 및 구비서류

가.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와 관계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당시 보건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나. 응시원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소정서식)

(2). 이력서 1통

(3). 보건소장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1통

(4). 졸업된 확인증 1통 (소정서식)

(5). 학점수료자에 관하여는 수료확인증 1통 (소정서식)

(6) 사진(반명함판으로 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탈모 전면으로 촬영한것) 3매.

(7)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1통

(8). 수수료 200원(다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6. 합격자 발표 예정일 및 발표방법 217

가. 학과시험 발표

1967. 11. 1.

나. 최종발표 1967. 11. 15.

당시 후정에다 합격자 명단을 발표

로 한부 보존합니다

7. 기타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구(청색 볼펜 또는 잉크 및 연필) 와 실기시험에 소요되는 이 미용 기구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7시30분 까지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시험감독관 의 지시를 받을것 (지참자는 시험을 불허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과나 각구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할 것

1967. 9. 1967. 9.9

서울특별시장

8. 예산내역

가. 세입예정액

(1) 일금 300.000 원정

(2) 산출기초

이용사용시 800명 x 200원 = 160000

미용사용시 700명 x 200원 = 140.000

나. 소요경비

(1) 소요경비 집행은 우선 공고후 응시자 수효를 파악한후 확정 소요액을 기초산출하여 집행 한다 (별도 결재)

(2) 단 신문공고비는 우선 다음과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 신문공고비 지출내역

(1). 예산비목. 보선비. 보선관리비 청사관리비 소모품 및 수선비

(2) 금 [illegible]0,700 원정

(3) 산출기초

종별	금액	단가	산출내역	비고
신문공고료	20,800원	1단 1행 130원	2단 80행 80×2×130=20,800원	예산범위 [illegible] 1회

끝.

219

"別紙" 書式 應試志願書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이번 貴市道에서 施行하는 理容師 및 美容師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別添 關係書類 添附하여 志願합니다.

年 月 日

志願者 (印)

서울특별시장 貴下

220

添附書類

1 履歷書 1通
2 健康診斷書 1通
3 從業員確認證(學院修了者는 修了確認證 包含) 1通
4 寫眞 3枚
5 戶籍抄本 또는 住民登錄證 1通
6 手數料 2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별지" 書式

修了確認證

本籍

姓名

生年月日

위 사람은 　　學院에서 　　年 　月 　日부터 　　年 　月 　日까지 　日間 研究의 課程을 修了한 者임을 確認함.

年 　月 　日

○○學院長 　　印

서울特別市長 　　印

별지 "從業員確認證"
書式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위 사람은 ○○業所에서 補助員으로서 從事한 事實이 從業員申告台帳에 의하여 確認되었으므로 이에 證明함.

年 月 日

○○保健所長 (印)

記

從業所의 所在地	業所名	業主名	從業期間	備考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	
			〃	
			〃	